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보훈지청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 인력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2명(7급 2명), 지방보훈청의 인력 4명(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의 인력 1명(8급 1명)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8.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6명”을 “4명”으로, “3명”을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보 4명)과”를 “같으며,”로, “2명(행정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1명(행정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3”을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10”을 “308”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을 “2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9”를 “315”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2”로 하며, 행정주사보 “18”을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을 “2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5”를 각각 “64”로 하고, 농림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4”를 각각 “87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0”을 “131”로 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12”를 “209”로

하고, 방호서기보 “14”를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2”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8”을 각각 “878”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42”를 “143”으로 하며,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1”을 “218”로 하고,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2”를 “208”로 하며, 방호서기보 “14”를 “1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6”을 각각 “65”로 하고, 행정주사보 “20”을 “19”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등록심사 담당) “4”를 “14”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을 각각 “6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0”을 “19”로 하며, 행정서기 “2”를 “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등록심사 담당) “4”를 “14”로 한다.

총리령 제143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7급 3명, 8급 3명,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u>6명</u>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u>3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u>4명</u> ----- ----- <u>1</u> ----- <u>명</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의2 및 별표 11의2와 <u>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보 4명)과 별표 11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② (생략) 총리령 제143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2명, 별표 10의2의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및 별표 11의2의 행정서기 1명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 <u>같으며, --</u> ----- ----- -- <u>1명(행정서기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43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13</u>	<u>311</u>	-2
	.		.	.	
	.		.	.	
일반직 계			<u>310</u>	<u>308</u>	-2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1</u>	<u>2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19</u>	• <u>315</u>	-4
일반직 계	• <u>316</u>	• <u>312</u>	-4
행정주사보	• <u>18</u>	• <u>16</u>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u>21</u>	• <u>20</u>	-1
사무운영서기보	• <u>4</u>	• <u>3</u>	-1
	•	•	

[별표 4]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5</u>		<u>64</u>	-1	
일반직	계		<u>65</u>		<u>64</u>	-1	
	.		.		.		
	.		.		.		
농림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84</u>	• <u>878</u>	-6
일반직 계	• <u>884</u>	• <u>878</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30</u>	<u>131</u>	+1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 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12</u>	<u>209</u>	-3
•	•	•	
•	•	•	
방호서기보	<u>14</u>	<u>1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15</u>	<u>12</u>	-3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888</u>	<u>878</u>	-10
일반직 계	<u>888</u>	<u>878</u>	-10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42</u>	<u>143</u>	+1
•	•	•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 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21</u>	<u>218</u>	-3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12</u>	<u>208</u>	-4
•	•	•	
•	•	•	
방호서기보	<u>14</u>	<u>1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15</u>	<u>12</u>	-3
---------	-----------	-----------	----

[별표 11]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6</u>	• <u>65</u>	+9
일반직 계	<u>56</u>	<u>65</u>	+9
•	•	•	
•	•	•	
행정주사보	<u>20</u>	<u>19</u>	-1
•	•	•	
•	•	•	
전문경력관 다군(등록심사 담당)	<u>4</u>	<u>14</u>	+10

[별표 11의2]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8</u>	• <u>66</u>	+8
일반직 계	<u>58</u>	<u>66</u>	+8
•	•	•	
•	•	•	
행정주사보	<u>20</u>	<u>19</u>	-1
행정서기	<u>2</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다군(등록심사 담당)	<u>4</u>	<u>14</u>	+10